

Chubb 365매일안심운전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보험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해 판매합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최대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으로 합니다.
- ②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보험가입금액 |
|-----|--|--|---------|
| 기본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별금 (대인, 사고당 2천만원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별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별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별금(대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2,000만원 |
| 기본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 1,000만원 |

| 구 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보험가입금액 |
|-----|--------------------------------------|--|---------|
| | |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
| 기본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 금(동승자포함) II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피해자 1인 기준)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①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 1,000만원 한도로 지급 ②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 3,000만원 한도로 지급 ③ 140일 이상 진단시 :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5,000만원 |
| 특약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보장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주2)} | 500만원 |
| 특약 | (자가용운전자용) 별금보장(대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재물손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별칙)에 따른 별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별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별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별금(대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500만원 |
| 특약 | (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 피해 (인적/물적)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속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하나의 「보복운전」이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금을 지급 ※ 하나의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30만원 |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

| 부상등급 | 지급보험금 |
|---------|-------|
| 1급 | 500만원 |
| 2~4급 | 250만원 |
| 5급 | 125만원 |
| 6급 | 75만원 |
| 7급 | 30만원 |
| 8급~11급 | 15만원 |
| 12급~14급 | 5만원 |

(2)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①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사고당 2천 만원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단, 스쿨존 사고의 경우 3천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Ⅱ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3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5천만원을 한도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등급의 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자동차사고 벌금보장(대물) :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물 손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5백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 : 피보험자가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Ⅱ 및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공통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산출 예시

(남자 40세, 보험기간 1년, 일시납)

| 담보명 |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기본계약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인, 2천만원 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 2,000만원 | 13,770원 |
|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
|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II | 5,000만원 | |
| 특약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 보장 | 500만원 | 13,760원 |
|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500만원 | |
| |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30만원 | |
| 합계 | | | 27,530원 |

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